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앱마켓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경쟁 촉진 관련 시책 마련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05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앱 마켓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경쟁 촉진 관련 시책 마련 등	3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등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2.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 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앱마켓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경쟁 촉진 관련 시책 마련 등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앱마켓, 결제방식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앱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이용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제22조의9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의9(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평가(이하 “보안성 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성 평가에 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앱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u>
<u><신설></u>	

	<u>하여 모바일콘텐츠 이용경로, 이용방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u>

□ 검토사항

- 개정안은 후술할 “사이드로딩 제한 행위” 금지 조항과 함께, 보안성 평가 및 공개 근거 규정,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자가 포함된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두어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앱 마켓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독점과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현가능성, 중복규제 가능성,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의견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안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 차원의 보안성 평가·공개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평가를 위해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 등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존재하는 등 보안성 평가·공개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공급하는 앱 마켓 사업자가 보안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필요시 이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 마련 및 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등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안정성을 위해 보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하나, 보안성은 운영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운영체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매일 양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콘텐츠에 등에 대해 적시에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임.

- 또한 후술할 바와 같이 개정안에 포함된 금지행위 조항이 신설되면, 앱 마켓사업자의 ‘보안성’ 등을 위한 필요한 비례적 조치는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통해 평가 가능하므로, 이 규정은 대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안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및 경쟁촉진 시책 수립·시행 권한은 공정거래법 상 이미 마련되어 있고, 경쟁 촉진시책은 공정위원회가 전산업에 걸쳐 정합성·통일성·균형성을 갖추어 공정거래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모바일콘

텐츠 등의 보안성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호업무 평가 항목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반영되어 있어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은 현행 법령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공개할 경우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보안성 평가 및 공개의 경우 민간 영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며, 정부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기술 발전을 선도하거나 이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가 및 공개를 통해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임.
- 애플은 안 제22조의9제3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안성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사이드로딩 허용에 따른 보안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등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앱 마켓 사업자가 여러 단말장치를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체제별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제50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u>제11호</u> 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 ----- <u>제13호</u> ----- ----- ----- ----- ----- ----- ----- ----- ----- -----.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에 추가함.

-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사업자인 구글의 경우 복수의 앱 마켓을 선택하여 앱 배포가 가능하며, 모든 앱에 대한 동등 대우 보장을 위해 사이드로딩을 허용²⁾함.

< 구글 개발자 블로그 내 사이드로딩 관련 주요내용('20.9월) >

- 개발자가 서로 다른 플랫폼(모바일, PC 및 콘솔)의 여러 앱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당사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앱을 포함한 모든 앱에 대해 동등한 대우 보장

- 반면 iOS 운영 체제 사업자인 애플의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 정보보호 유출 등 보안 취약점의 이슈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 외 앱 다운로드 불가 정책, 즉 사이드로딩 불허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1)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 마켓,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

2)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제3자 앱 아카이브, 웹을 통한 앱 다운로드 등

□ 검토사항

○ 사이드로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 국내 신규 앱 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등 앱 마켓의 독과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경로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최근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게 앱 결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³⁾ 이는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고 DMA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 시 앱 설치에 대해 5% 수수료를, 이후 앱 이용시 지불하는 대금에 대해 10% 수수료, 그리고 핵심 기술 수수료 명목으로 앱 설치 시마다 0.5유로의 수수료를 유지하기로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이드로딩 허용이 강제될 경우 iOS 기기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이점이 사라지므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iOS 기기를 선택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권이 제한되고,

3) 2024.8.10. “EU ‘빅테크 갑질’에 제재… 애플, 앱 결제 방법 바꾼다” 조선일보 보도

개인정보 및 보안 공격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둘째, 사이드로딩이 허용될 경우 앱의 불법 복제 및 배포와 그에 따른 지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져 앱 개발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셋째,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특정 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한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은 헌법상 평등원칙⁴⁾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별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50조제1항제12호 관련해서 모바일 콘텐츠 등의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여 앱 마켓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입법목적의 실효적 달성을 위해 사후규제 외에도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 입법례와 같이 특정 앱 마켓 이외의 경로(다른 앱마켓 등)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1) 앱 마켓 사업자가 보안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 동 조치가 이용자의 OS 제공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한 모바일콘텐츠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필요한 사항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안 제50조제1항제13호에 대해서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모바일 콘텐츠 등이 다른 단말 장치에서도 이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앱 마켓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입법목적의 실효적 달성을 위해 사후규제 외에도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 입법례와 같이 여러 단말장치를 제어하는 OS 제공 앱마켓사업자에게 이용자가 다른 앱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도 자신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사전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1) 앱 마켓 사업자가 보안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고, 2) 동 조치가 이용자의 OS 제공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한 모바일콘텐츠 이용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관련해서는 제3자 앱 마켓 등 대안 유통경로(사이드로딩)에 의한 경쟁 촉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안 제50조제1항제13호 신설 관련해서는 제3자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을 다른 단말장치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앱 마켓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나, 당해 내용은 위 안 제50조제1항제12호의 내용에 포섭 가능한 내용이므로 별도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규율하려는 내용은 반경쟁적 행위로 공정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을 통해 규율하려는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 원스토어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또한 개정안에 더해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사의 앱 마켓에 제공 및 지원하는 기술적·정책적 자원을 모든 기기에서 차별없이 제3자 앱마켓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 제50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는 일부 용어가 불명확해 앱스토어 사업자 외에도 모바일콘텐츠와 관련된 수많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본 법안에 따른 규율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 목적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 애플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는 경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최적화된 iOS생태계 유지가 어려우며, 스미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종합하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해소 필요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필요성” 등의 입법취지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주무 및 관계 부처 의견과 “사이드로딩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찬반의견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